

“인생의 마지막 순간,
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”

연명의료결정제도

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
사전연명의료의향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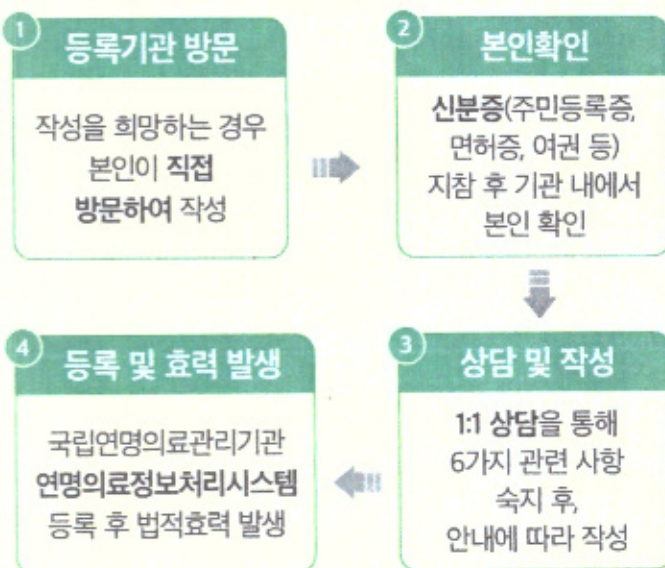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란?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(연명의료)을 유보(시행하지 않는 것)하거나, 중단(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)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(2018. 2. 4. 「연명의료결정법」 시행)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?



보건복지부

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·필장사

안성시노인복지관 (031-674-0794)

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(대표전화 1855-0075)

사전연명의료의향서(事前延命醫療意向書)

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가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직접 결정하여 미리 작성해 둬

시행법	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(연명의료결정법) (호스피스: 2017. 8. 4, 연명의료: 2018. 2. 4. 시행)
연명의료 중단결정	2019년 3월 28일 개정/모든 연명치료중단 ※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“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.”는 서면동의(자기 결정권) ★★★ [연명의료 종류] 심폐소생술, 혈액투석, 항암제투여, 인공호흡기착용 체외생명유지술(호흡부전·순환부전 시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) 체외순환장치(에크모), 출혈(도관삽입, 위궤양, 뇌출혈), 수혈, 승압제투여 등 그 밖의 모든 연명의료 포함.
판정:	★★★ [연명의료치료 거부 판정] 담당의사 1명과 관련 의사 1명이(총 2명) 더 이상 “<u>살 가망성이 없다.</u>”(임종예고)고 판정되었을 때 시행
호스피스 (병동형 가정형 자문형)	말기환자(암, AIDS, 만성간경화,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)의 통증 및 증상을 조절하고 심리적, 사회적, 영적인 돌봄지원 및 임종 준비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. ※ 의사, 간호사, 종교지도자, 사회복지사, 자원봉사자 등 구성
문 의	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·철장사 안성시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무실: 031-674-0794 직 통: 031-673-5590